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

2023년 9월 11일  
미래·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3년 8월 25일

나. 제안자: 김현진 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: 2023년 8월 28일

라. 상정일자: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미래·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·의결(2023. 9. 11.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김현진 의원)

### □ 제안이유

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및 「건강가정기본법」에 따라 저출산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,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여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# □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(안 제1조, 안 제2조)

나.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시책의 추진 (안 제4조)

다. 보조금 지원 (안 제5조)

라. 다자녀가정의 날 (안 제6조)

마. 우대 및 지원중단 (안 제7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, 제28조

2)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4조, 제10조, 제32조

3)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5조, 제21조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편성

다. 해당부서: 가족정책과

라. 기 타: 입법예고(2023. 8. 28. ~ 9. 1.) 결과 의견 없음

#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권오숙)

가. 제정취지

○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,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

## 나. 주요 제정내용

-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저출산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,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음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다자녀가정”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.
2. “다자녀가정 우대카드”란 서울특별시 다동이행복카드를 말한다.

-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및 우대 시책 및 이를 위한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였고

**제4조(우대 및 지원)** 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지원 및 우대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구가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이용료 감면
2. 자녀 양육·보육 및 교육에 관한 비용의 지원
3.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비용의 지원
4. 문화·관광·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비용의 지원
5.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비용의 지원
6. 그 밖에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안 제6조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및 가족과 자녀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한 ‘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의 날’의 지정·운영을 규정하였음

- 안 제8조에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한 표창 대상을 규정하였음

**제8조(표창)** 구청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1.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
2.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이바지한 유공자
3. 다자녀가정 우대 등 출산·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기업·기관·단체

## 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심각한 출산율 저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자녀 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육에 따르는 각종 부담을 완화하고 행복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
- 통계청의 '2022년 출생통계'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9,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1,000명(4.4%) 감소했으며, 합계출산율<sup>1)</sup>도 0.78명으로 역대 최저로 나타나[2021년 기준, OECD 회원국 평균 1.58명],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.0명 아래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상황으로 출산율 저하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
- 우리 구 역시 지난 10년 간(2012년 → 2021년) 합계출산율은 46.3%(1,151명 → 0.617명), 출생아 수는 48.8%(5,875명 → 3,006명) 급감하였음<sup>2)</sup>
- 이에 정부에서는 '저출산·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'의 후속 조치로 '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 방향'을 발표(2023. 8. 16.)하여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통일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각종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, 타 지자체에서도 다자녀 지원 범위를 2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추세임

1) 합계출산율: 가임 여성(15~49세) 1명이 평생 동안 날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

2) 출처: 국가통계포털(KOESIS)

- 우리 구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다자녀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
- 출산·양육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 입법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며,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됨

##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 6. 토론요지: 생략

##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 법령 1부.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## □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32조(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 □ 「건강가정기본법」

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, 가정친화적 환경조성,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1조(가정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가족구성원의 정신적·신체적 건강지원
2.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
3. 안정된 주거생활
4. 태아검진 및 출산·양육의 지원
5. 직장과 가정의 양립
6. 음란물·유홍가·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
7.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
8.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
9.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·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